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징 계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공직사회에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갑질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비위로 이를 근절을 위해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5조제2항제15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3 일부 개정)

1)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2)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별도 분리 및 징계양정 강화
다.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 보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징계면제 조항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5. ~ 12. 15.)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별표 1 제7호바목을 제7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 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	-------	-------

별표 1 비고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비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인격·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행위

별표 3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 ~ 감봉	(현행과 같음)
	혈중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임 ~ 정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생략)	제5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